

# 「고등교육」 연구윤리지침

2017. 11. 02. 제정

2018. 03. 19. 개정

2022. 05. 12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의 목적은 학술지 「고등교육」(이하 학술지라 한다)의 연구윤리지침을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지침은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연구부정행위)**

- ①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“변조”는 연구자료, 장비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,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“표절”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타인(자신의 이전 연구 포함)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의 표시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중복게재”는 연구자의 이전 연구내용과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 및 저작물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4조(투고자의 의무)** (신설 2022. 5. 12.)

- ① 투고자가 특수관계인(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저자와 배우자, 자녀, 4촌 이내 가족 관계인 자)과 함께 원고를 투고할 시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한다.
- ② 투고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
**제5조(편집위원의 의무)**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 및 게재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.
-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닌 적합한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.
- ④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 및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.
- ⑤ 편집위원은 심사자의 개인 정보를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.
- ⑥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기관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. (신설 2022. 5. 12.)

**제6조(심사자의 의무)**

- ① 심사자는 심사 논문을 기간 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심사자는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 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.
- ③ 심사자는 저자의 인적 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.

**제7조(연구윤리위원회 운영)**

- ① 이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는 사례로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사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, 편집위원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, 의결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동의로 결정한다.
-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,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후속조치,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문제를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.

**제8조(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)**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, 조사의 내용과 필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.

- ① “예비조사”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접수일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그 후로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② “본조사”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“판정”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 예비조사 착수에서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일정은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
-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재조사를 실시한다.

**제9조(소명기회의 보장)**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론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10조(조사대상자의 보호)**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심의 및 의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.

**제11조(연구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)**

-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조치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,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.
- ③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.
- ④ 기타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판정된 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, 경고, 자격 정지,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